

용어 사전

((CC-DC-DV-001) 가정폭력, 아동 학대,
취약한 성인 학대에 대한 보호 신청을 위해 사용)

- 신청인:**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
- 피신청인:** 학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람.
- 구제 대상자:**
- a) 피신청인의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
 - b) 피신청인의 동거인
 - c) 피신청인과 혈연관계, 혼인관계 또는 입양을 통하여 연고가 맺어진 개인
 - d) 명령 신청을 하기 전 일(1)년 이내에 최소한 90일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 또는 구제 대상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피신청인 또는 구제 대상자의 부모, 의붓부모, 자녀, 또는 의붓자녀
 - e) 취약한 성인
 - f)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개인
 - g) 명령 신청을 하기 전 일(1)년 이내에 피신청인과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람
- 취약한 성인:** 매일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제공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성인.
- 배우자:** 결혼한 사람.
- 동거인:** 명령 신청을 하기 전 일(1)년 이내에 최소한 90일의 기간 동안 집에서 피신청인과 함께 살면서 피신청인과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람.
- 보육 제공자:** 미성년 자녀를 감독하고 돌보는 사람.
- 애완동물:** 가축을 제외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 학대:**
- a)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개인에게 즉시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힐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
 - b) 심하거나 경미한 정도의 모든 폭행
 - c) 강간이나 성폭행, 또는 강간 미수나 성폭행 미수
 - d) 불법 감금 (개인을 강제로 감금하는 행위)
 - e) 스토킹
 - f) 아동 학대
 - g) 취약한 성인 학대
- 아동 학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가 해를 입거나, 그러한 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적인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그 아동을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으로 돌보거나, 양육하거나, 감독하는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나 가구 또는 가족 구성원이 그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것.
- 취약한 성인 학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매일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성인에게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으로 대한 결과로, 또는 악의적인 행위를 한 결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적 피해:**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능력이 관찰 가능하고, 식별 가능하고, 상당한 정도로 손상된 상태.
- 긴급 가족 부양비:** 피신청인이 구제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 때 명령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 개인은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신청인이나 구제 대상자의 필요, 그리고 신청인 또는 구제 대상자와 피신청인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의 사용 및 점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 이러한 권리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신청인 명의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명의로도 등록되어 있고, 그 자동차가 신청인의 취업, 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보호 명령:

지방법원 커미셔너가 발부하는 학대 보호 명령으로서, 명령이 발부된 후 2 업무일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보호 명령에서, 커미셔너는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구제 대상자를 학대, 학대하겠다고 위협, 연락, 연락을 시도 또는 괴롭히지 말 것
- b) 집, 학교, 직장, 가족 구성원의 집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집에 대해 일시적인 사용 및 점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c) 집에서 퇴거할 것
- d) 특정한 상황에서는, 커미셔너가 임시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음
- e) 구제 대상자 또는 피신청인의 애완동물에 대해 임시 점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임시 보호 명령:

판사가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부하는 명령으로서, 최종 보호 명령 심리를 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육(6)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은 신청인의 신청만으로(일방적으로) 발부되거나, 또는 피신청인이 임시 보호 명령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증언에 따라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에서, 판사는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구제 대상자를 학대, 학대하겠다고 위협, 연락, 연락을 시도 또는 괴롭히지 말 것
- b) 집, 학교, 직장, 또는 보육 제공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 c) 집에서 퇴거할 것
- d) 구제 대상자 또는 피신청인의 애완동물에 대해 임시 점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판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보호 명령:

판사가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부하는 명령으로서, 일(1)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추가 심리를 한 후 최종 보호 명령의 기간을 육(6) 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호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2) 년의 기간 동안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구제 대상자가 이전에 동일한 피신청인에 대해 최종 보호 명령을 입수한 경우, 그리고
- 이전의 명령이 최소한 육(6) 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 그리고
- 그 명령이 만료된 후 일(1) 년 이내에,
 - 피신청인이 구제 대상자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또는
 - 피신청인이 그 명령에 동의하는 경우

판사는 최종 보호 명령에서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구제 대상자를 학대, 학대하겠다고 위협, 연락, 연락을 시도 또는 괴롭히지 말 것
- b) 집, 학교, 직장, 또는 보육 제공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 c) 집에서 퇴거할 것
- d) 긴급 가족 부양비를 지불할 것
- e) 상담을 받을 것
- f) 총기를 제출하고, 명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어떤 총기도 소유하지 말 것
- g) 법원 비용 지불

판사는 추가로:

- a)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고, 임시 방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b) 자동차의 임시 사용 및 점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c) 피신청인이 긴급 가족 부양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급여 지급 보류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d) 구제 대상자 또는 피신청인의 애완동물에 대해 임시 점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e) 판사가 구제 대상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다른 구제를 명령할 수 있음

영구 최종 보호 명령:

이전에 발부된 최종 보호 명령의 피신청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원래의 보호 명령을 받은 구제 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신청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명령으로서, 원래의 최종 보호 명령 발부의 사유가 된 동일한 학대 행위를 했고, 형법 조항에 명시된 위반에 대해, 또는 살인을 하기 위한 모의 및 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최소한 오(5) 년의 형기를 복역하라는 선고를 받았고, 최소한 12 개월의 형기를 마친 피신청인에게 적용됩니다.